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1268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가람, 김문주, 김하연, 김형완, 전성한, 전진우, 정지혜, 박규희

변론 종결2019. 5. 16.

판결 선고2019. 6. 1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15,080원과 그 중 77,886,560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9.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6.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90,560,4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90,560,41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주장

별지 "청구원인 1항, 2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피고 B: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제3항"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 을라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2016. 3. 27. 피고 C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2017. 6. 19.에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E에 대한 할부금융 11,884,00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F에 대한 운용리스 20,541,000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325,000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연체를 발생시키는 등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인 피고 C의 신용상태도 보증사고 발생 여부 판단의 한 요소인데, G은행이 피고 C에 대해 2017. 6. 14. 대출금 1억 68,545,000원에 관한 연체정보를 등록하였다는 점도 참작되었다는 것이다.1) 한편, 보증대상채무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사고통지를 한 것은 2018. 1. 22.이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77,886,56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2018. 5. 16.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5. 1. 23.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구상의무에 대해 피고 B,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19.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회사를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피고 B, 피고 C에 대해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3. 27.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위 매매계약 무렵에 보증사고로 인한 사전구상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위 매매일자는 피고 회사를 보증사고기업으로 지정한 2017. 6. 19.로부터 1년 3개월여 전이고, 그 무렵 사전구상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서 달리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나아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소유인 광주시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 채권자 I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부동산에 대해 2017. 1. 12. 채권자 주식회사 K의 신청에 의한 청구금액 24,431,050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곧이어 2017. 4. 13. 위 K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 발생한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 등이 사전구상채권 발생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야 하는데(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9호), 오히려 위 각 강제경매신청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하기 이전인 2017. 5. 19. 모두 취하되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 C에 대해 생긴 압류 등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1. 20.과 2017. 1. 19.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한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 악화나 신용도 하락 등 보증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단되는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보증감축 등으로 반영하게 하였는데(조건변경처리기준 제12 내지 21조), 피고 회사의 경우 보증감축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보증기한 연장이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3. 27. 무렵을 전후로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보증약정서 제5조에 정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등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에 원고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반증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위 피고들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6. 3. 27. 무렵에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업

별지

1) 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